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2. 18(목) 평창군수(보건사업과장)
- 회부일자 : 2016. 04. 14(목)
- 상정일자 : 2016. 04. 27(수)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국민건강증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정희)

-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수”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